제252회 임시회
2006. 7. 21.(금)

제 안 설 명 서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 안 설 명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경 과

가.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제안일자 : 2006년 7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임시회

○ 2006년 7월 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강태원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무 중 교육청 업무의 증가로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각각 기획행정위원회는 8인을 7인으로 하고 교육사회위원회는 7인을 8인으로 함

3. 검토보고요지

(의회운영전문위원 조재학)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위원회별 위원정수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교육청 업무 증가에 따른 의원정수의 증원이 요구되는바

○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정수를 8인에서 7인으로 하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정수를 7인에서 8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기 타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

제출연월일 : 2006. 7. 14.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무 중 교육청 업무의 증가로 일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기획행정위원회는 8인을 7인으로, 교육사회위원회는 7인을 8인으로 함(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발췌 : 별첨

가.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8인
2. 기획행정위원회 7인
3. 교육사회위원회 8인
4. 산업경제위원회 7인
5. 관광건설위원회 8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기획행정위원회 8인 3. 교육사회위원회 7인 4. (생 략) 5. (생 략)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 1. (현행과 같음) 2. 기획행정위원회 7인 3. 교육사회위원회 8인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2006.4.28>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개정 1991·12·31>